



보도	2023.6.29.(목) 조간	배포		2023.6.28	.(수)
다다ㅂ걔	공시심사실	책임자	팀 장	김준호	(02-3145-8422)
담당부서	공시심사기획팀	담당자	선 임	소현준	(02-3145-8424)

## "무늬만 신사업? 정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"

- 정관추가 신시업은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공시하여야 하고 기재점검도 실시 -
-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 예방 효과 기대 -

## - 주요 내용 -

- (배경)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27일 발표한 '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, 후속조치로 공시서식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- ☐ (주요내용) '23.6.30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
-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 으로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.
- **동 개정서식은 '23년 반기보고서**부터 **적용**되며, '23년 하반기 중 **개정서식**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.
- □ (호과) 향후 주주·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,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<정관에 추가한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방안(요약)>

- □ (대상사업) 최근 3년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 \* 기존 사업목적을 수정한 경우에도 사업목적 추가와 사실상 동일한 경우 포함
- □ (공시서류) 정기보고서(사업·반기·분기보고서) ※ '23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
- □ (공시내용) 사업개요, 추진현황, 기존사업과의 연관성, 향후 추진계획 등
  - \* 추진현황에는 제품 및 서비스개발 진척도, 연구개발활동 내역, 실제 매출발생여부 등 포함
- □ (미추진시) 미추진 사유,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여부 등 기재

# 1 궁시서식 개정 주요 내용

# 신사업 추진경과 공시 의무화

※ §3-7-2③ 신설

- ☐ (**연항 및 문제점**) 현행 정기보고서 서식에서는 신규 사업의 추진 경과 기재 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판단\* 가능
  - \* 현 서식은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'중요한' 신규사업에 대해 기재의무를 부과 하고 있어, 회사가 신규사업의 중요성 여부를 직접 판단할 여지
- o 이에 정관상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음에도 진행경과 및 계획수립 여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례 빈번
- □ (개선방안) 정기보고서에 별도 서식을 신설하여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경우 사업 추진경과 등 기재를 의무화
- o 정관에서 추가한 사업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관련 진행 상황은 주주·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감안

## [작성대상 및 공시서류]

- □ (작성대상) 공시대상기간\*(최근 3사업년도) 중 회사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추가\*\*한 모든 사업
  - \*(사업보고서)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 (반기.분기보고서) :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와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
  - \*\* 기존 사업목적을 수정하는 등 사업목적 추가와 사실상 동일한 경우도 포함
  - ※ (예) '23년 반기보고서 작성시 '21년 ~ '23년 6월 기간 중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한 해당 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기재하여야 함
- □ (공시서류) 정기보고서(사업보고서, 반기·분기보고서)

## [공시내용]

- □ (사업목적 추가 현황표) 공시대상기간(최근 3사업연도) 중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내역(사업목적의 내용, 추가일자\*)을 명시
  - \*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 추가가 승인된 날짜

##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

구 분	사업목적	추가일자
1	○○○ 제조업	′22.X.X.
2	△△△ 판매업	′23.X.X.
3	◇◇◇ 유통업	′23.X.X.

② (사업 추진현황)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사업목적별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

## 기재항목별 세부내용

항 목	내 용		
① 사업 개요	· 사업의 내용 및 진출목적		
□ 시합 개표	· 시장의 주요 특성 ·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		
교 사업 초기청합	·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· 연구개발활동 내용		
② 사업 추진현황	· 제품 개발 진척도 · 실제 매출 발생여부 등		
[3] <b>추진 관련 위험</b>	·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		
<u>의 구인 인인 제임</u>	· 기존 영위 사업 손익에 미치는 영향 등		
4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	· 기존 영위 사업의 기술·설비 등 활용 가능성		
④ 기는 자답파의 한편경	· 기존 판매 상품·서비스와의 유사성		
	· 전체 진행단계 및 각 단계별 예상 완료시기		
D 8구 구면세력	· 향후 추진 예정사항 ·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		

- ③ (미추진 사유) 기재사항 중 '② 사업 추진현황'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미추진 사유 및 배경(원인)을 기재하고,
-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여부 및 추진 예정시기를 기재

**※** §3-7-2①② / §4-2-12

- □ (사업목적 현황 및 변경이력 신설) 정기보고서에 회사 정관상 사업목적을 기재하는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,
- 현재 정관상 사업목적 현황 및 실제 사업영위 여부, 사업 목적 변경이력\*등을 기재하도록 공시서식 신설
  - \* 변경 목적, 변경일,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
- □ (기존 신사업 서식 적용범위 명확화) 중복기재 방지를 위해 기존 신사업 서식\* 기재대상에 사업목적 추가건은 제외하도록 명시
  - \* 신제품 개발, 신시장 개척 등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 등에 관하여 기재의무를 부과

## 2 기대 효과

- □ (투자판단)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업의 진행현황 및 추진 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 가능
- □ (불공정거래 예방)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(부정거래행위)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## 3 향후 계획

- □ 동 개정 공시기준은 '23.6.30. 시행되며, 시행 이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('23년 반기보고서, 12월 결산법인 기준)부터 적용
- □ 금융감독원은 '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\*으로 동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점검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
  - \*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'23.8.14.까지 제출

<sup>☞</sup>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# 불 임 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」개정 내용

현 행			안
제3장 회사의 개요		제3장 회사의 기	개요
제7절 정관에 관한 사항		제7절 정관에 관현	<u> </u> 사항
<u>&lt;신 설&gt;</u>	l	<b>조(사업목적)</b> ① 공시	
		]관상 명시된 회사의 에 따라 기재한다.	사업목석을 다
	사업목적 현황		
	구 분	<u>사업목적</u>	사업영위 여부
	1		영위
	2		미영위
	3		영위
	<u>i. 공</u> 도 <u>ii. '人</u> 회 영 작 정 있 소	성지침 】  HA서류작성기준일 현재 DE 사업목적을 그대로 기대로 기대로 기대로 기대로 기대로 기대로 기대로 기대로 기대로 기	기재한다. 유작성기준일 기준 는 사업을 실제로 '영위'(공시서류 조제3항제4호에서 에 준하는 사항이 :히 추진 계획만 그렇지 아니한
	경(* 각 만, 제출 이	이대상기간중 정관상추가, 수정 또는 삭제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한 경우로서 사업된 정기주주총회 안건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	ll)한 경우 다음 - 기재한다. 다 ll 사업보고서를 목적 변경 안건 ll 포함되어 있

### 1. 사업목적 변경 내용

_			TT =1	
구분	변경일	사업목적		
11		변경 전	변경 후	
マコ	추가 20XX. X. X.		7. 〇〇〇 생산	
子小		-	및 제조업	
수정	20XX. X. X.	5. 000	5. 🛆 🛆 🛆	
		판매업	판매업	
삭제	20XX. X. X.	9. ೦೦೦ 유통		
		및 도소매업	-	

#### 2. 변경 사유

#### 【 작성지침 】

- i.'사업목적 변경 내용'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.
  - 가. '변경일'은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이 승인된 날짜를 기재한다. 다만, 정기주주총회에서 변경이 승인되기 전인 경우에는 <u>해당 주주총회 개최일을</u> 기재한다.
  - 나. '구분'에는 사업목적 변경 유형에 따라 '추가', '수정', '삭제' 중 하나를 기재한다.
  - 다. '사업목적'란은 사업목적 변경 유형별로 다 음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.
    - (1) 추가 : '변경 전'은 '-'로 표시하고, '변경 후'에는 추가된 사업 목적을 기재
    - (2) 수정 : '변경 전'은 수정 전 사업목적을 기재하고, '변경 후'에는 수정 후 사업목적을 기재
    - (3) 삭제 : '변경 전'은 삭제 전 사업목 적을 기재하고, '변경 후'는 <u>'-'로 표시</u>
- ii. '변경 사유'는 각 사업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,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
- 가. 변경 취지 및 목적, 필요성
- 나.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(예 : 이사회, 소수주주(주주제안) 등)
- <u>다.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</u> 에 미치는 영향 등
- ③ 공시대상기간중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 (기존 정관을 수정한 경우로 사실상 사업 목적이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 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과 전망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.

####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

<u>구</u> 분	<u>사업목적</u>	추가일자
1		
2		
3		

- 1. 그 사업 분야(업종,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) 및 진출 목적
- 2. 시장의 주요 특성·규모 및 성장성
- 3.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(총 소요액, 연도별 소요액), 투 자자금 조달원천, 예상투자회수기간 등
- 4. 시업 추진현황(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, 연구 개발활동 내역,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, 매출 발생여부 등
- 5.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
- 6. 주요 위험
- 7. 향후 추진계획
- 8. 미추진 사유

#### 【 작성지침 】

i. 공시대상기간중 정관상 추가된 모든 사업목 적에 대하여 기재한다. 다만, 제3호부터 제 4호까지의 사항 중 회사의 영업비밀이거나 회사의 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내 용에 한정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

- ii. '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'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.
  - <u>가. '내용'은 공시대상기간중 정관상 추가된</u> 모든 사업목적을 그대로 기재한다.
  - <u>나. '추가일자'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사</u> 업목적 추가가 승인된 날짜를 기재한 다.
- iii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각 사업목 적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사업목적을 통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연관(예: A 제조업, A 유통업)되어 구분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.
- iv. '기존 사업과의 연관성'은 해당 사업 추진 시 회사가 기존 영위 중인 사업의 기술력, 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, 기존 판매 제품·상품·서비스와의 유사성(기능, 특징) 등을 기재하고, 기존 영위 사업과의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'해당사항 없음'을 표시한다.
- v. '주요 위형'에는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해 당 사업이 속한 산업, 업종 및 영업의 특 성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위험, 기존 영위 사업의 손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기재한다.
- vi. '향후 추진 계획'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 여 기재하되, 기재내용 중 향후 추진 과정 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는 해당 사실을 별도로 기재한다.
  - <u>가. 전체 진행단계 및 각 진행단계별 예상</u> <u>완료시기</u>

	나. 향후 1년 이내 추진 예정사항         다.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         vii. '미추진 사유'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        제4호에 따른 사업 추진현황이 존재하지         않을 경우 각 사업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재         하며,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.         가. 그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 및 배경         경         나.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 여부 및 향후 추진 예정시기         다. 추진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및 변경내용
제4장 사업의 내용	제4장 사업의 내용
제2절 제조·서비스업	제2절 제조·서비스업
제4-2-12조(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)	제4-2-12조(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)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공시대상기간중 새로이 추진하였거나,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 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(신제품 개발, 신시 장 개척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 과 전망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. <단서 신설>	
<ol> <li>그 사업 분야(업종,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) 및 진출 목적</li> <li>시장의 주요 특성·규모 및 성장성</li> <li>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(총 소요액, 연도별 소요액), 투자자금 조달원천, 예상투자회수기간 등</li> </ol>	의 내용 등) 및 진출 목적 2. 시장의 주요 특성·규모 및 성장성 3.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(총 소요액, 연도별 소요액), 투

- 4. 신제품이나 신사업분야가 계획단계인지 여부, 시제품이 존재하는지 여부, 제품 설계의 진척도, 공정화과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 진행상황 판단에 필요한 정보
- 4. 사업 추진현황(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, 연 구개발활동 내역,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 척도 및 상용화 여부, 매출 발생여부 등)